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직원채용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1. 재공고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직급	분야	인원	주요업무
기간제	시설장	센터장	1	◦센터 운영 및 업무 총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점검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인사관리 및 채용 관련 업무 ◦센터 위원회 운영 등
	3급 (팀장급)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1	◦발달검사 및 결과 상담, 사후 관리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발달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등
		언어재활사/ 발달재활사	1	
	4급 (팀원)	특수교사	3	◦발달검사 및 결과 상담, 사후 관리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발달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등 ◦초기상담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발달재활사		
사회복지사		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네트워크 사업 ◦센터 회계 및 사업 홍보	
채용인원			7	

- 채용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합니다.
○ 채용 후 업무는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요건

직급	분야	응시 자격
시설장	센터장	1. 특수교사·언어재활사·임상심리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특수교사·언어재활사·임상심리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특수교사·언어재활사·임상심리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3급 (팀장급)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1.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언어재활사/ 발달재활사	1.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인정 확인서 소지자(제공영역: 재활심리,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감각재활, 운동재활 중 하나) 중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4급 (팀원)	특수교사	1.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임상심리사	1.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언어재활사	1.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발달재활사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인정 확인서 소지자(제공영역: 재활심리,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감각재활, 운동재활 중 하나) 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공통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참고1]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참고2]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참고3]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참고4]	

* 관련 분야: 특수교육, 언어치료, 임상심리

** 자격기준 중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기준

☞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판단)에서 시험위원이 인정한 사람

3. 임용 조건 및 보수 수준

가. 근무/근무지: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우리복지관 내(제주시 소재)

나. 보수수준

○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통합) 준용

* 보수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다. 채용조건 사항

- 근로조건: 기간제근로자
- 정년 : 만 60세(단, 센터장은 만 65세)
- 근로기간: 계약 체결일 ~ 2025.12.31.(위·수탁기간 만료시까지*)
 - * 위·수탁 협약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수탁기간 만료일이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 일정

구 분	1차공고 일정	1차 재공고 일정
공고	‘24. 3. 27.(수) ~ 4. 8.(월) 17:00	‘24. 4. 12.(금) ~ 4. 19.(금) 17:00
원서접수		
서류전형	‘24. 4. 11.(목)	‘24. 4. 24.(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안내	‘24. 4. 12.(금)	‘24. 4. 26.(금)
필기시험(인성검사)	‘24. 4. 16.(화)	‘24. 4. 30.(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안내	‘24. 4. 18.(목)	‘24. 5. 3.(금)
면접시험(인성·역량 면접) ※센터장은 운영계획발표	‘24. 4. 22.(월)	‘24. 5. 8.(수)
최종 합격자 발표	‘24. 4. 23.(화)	‘24. 5. 10.(금)
임용등록기간	‘24. 4. 24.(화) ~ 24. 4. 29.(월)	‘24. 5. 13.(월) ~ 5. 20.(월)
임용	‘24. 5. 3.(금)	‘24. 5. 27.(월)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지원서 접수

가. 채용 공고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나.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서식1] 2. 자기소개서 [서식2] 3. 직무수행계획서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5. 자격증 사본 6. 재직/경력 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 인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기재)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경력확인이 안될 경우 미인정) 8.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 남성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사회적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서식5] 2. 운영계획 발표자료(PPT)	센터장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인사기록카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 5. 후견등기부사항 부존재증명서 6.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8.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최종합격 후 제출 (합격일 이후 발행)

다. 지원서 접수 방법: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

구분	주소	비 고
전자 우편	jejupass1@jeju.pass.or.kr	
방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인사노무팀	평일(월~금 09:00~18:00) ※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라.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노출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됨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최종합격 이후 재직 및 경력증명 내역 수정 불가)
- 응시자의 연락 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음
- 최종합격 발표 후 상기 증명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6. 전형절차 및 심사기준

가. 서류전형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심사방법
 - 채용분야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 제출서류 불성실자 불합격 처리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공고상 제주사회서비스원 서류 양식이 아닌 경우
 - 자기소개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기재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을 기재한 경우
 -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합격자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나. 필기전형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본부(예정)
- 출제방법: 오프라인 인성검사 문제지(※40분간 240문항)
- 합격자 결정: 아래 조건을 만족한 자 중 고득점자 순 결정(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인성검사 신뢰도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정신건강 점수가 4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인성 평균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부정적 성향, 반사회성, 집단화 성향의 점수가 각 60점 미만인 자
-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함(나머지 절사)

다. 면접전형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본부
- 면접 평정요소

구분	공직책임성 등	이해력·지식수준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인성 및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배점
3,4급	20	20	20	20	20	20	100
센터장	10	10	10	10	10	10	50

- 센터장 응시자 면접
 - 운영계획서 PPT 15분 내외 발표(50점), 대면면접(50점) 비중으로 심사
 - 운영계획 발표 평정 요소: 운영의 비전, 운영 및 관리계획, 영유아 발달 관련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방안, 사업추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자원활용 방안을 중점으로 평점
- 합격 배수: 선발예정 인원 이내

라. 가점 기준(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대 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만점의 5%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우선 채용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①→②→③ 순으로 우대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으로 합격자 선정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사회적 취업취약계층,
- ④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공적책임성 등 → 이해력 및 지식수준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인성 및 직업관 → 창의성 및 전문성)

다. 유의사항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라. 최종 합격자 통지: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

8. 예비합격자

가. 예비합격자 제도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9.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

가.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나. 채용서류 반환

-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에 제출
- 반환방법: 응시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은 사회서비스원 부담)

10.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절차 포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수시 확인 바랍니다.

나.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전형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다.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070-8805-48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참고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

- 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동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